

(주)아모레퍼시픽그룹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 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 아래 대내외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함과 동시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기업가치 극대화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 됨을 명확히 인식한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본 헌장을 회사 경영활동과 가치판단의 일반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I. 주 주

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의 증가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④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회사는 종류주주총회 등을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된다. 회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그 거래내역을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시한다

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II.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 ③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 경험 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한다.
- ④ 이사 후보자격은 성별·지역·학벌·장애·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없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며,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4.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통신수단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모든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7. 이사의 책임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8. 평가 및 보상

① 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② 회사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 ① 회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구성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IV.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공시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한다.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2. 회사 경영권 시장

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